

근 담 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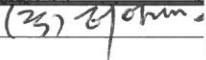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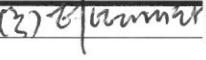
근 질 권 설 정 계 약 서

(예 \* 적금용, 동산용, 유가증권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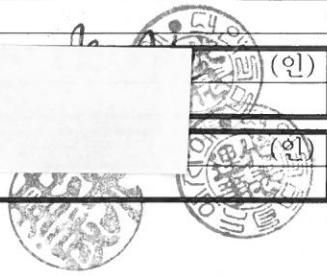
팀 원	팀 장	본부장
본인 및 자서 확인		

년 월 일

\*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'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'과 계약서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, 굵은선  으로 표시된란(당사자란 제1조 및 계약서 각면)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채권자겸 균질권자	주식회사 누리펀딩대부	(인)
주 소		
채무자		(인)
주 소		
근질권설정자		(인)
주 소		

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균질권 설정 계약을 맺습니다.



제1조 균질권의 설정

근질권설정자(이하 "설정자"라 합니다)는 대부거래 기본약관을 승인하고, 이 계약서의 "담보목적물 목록"란에 기재한 채권·물건·증권등(이하 "담보목적물"이라 합니다)에 다음 내용으로 균질권을 설정하고, 채권자 앞으로 그 담보목적물의 인도 절차를 마쳤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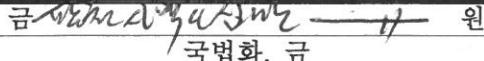
1. 피담보채무의 범위

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두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, 설정자는 그 가운데 에서 정한 채무(이자,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합니다)를 담보하기로 합니다.

특정 균담보					
채무자가 채권자(본·지점)에 대하여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					
년	월	일자	약정서,	년	월

2. 담보한도액 등

가. 담보한도액

<input type="checkbox"/>		— 원
<input type="checkbox"/>		국법화. 금

나. "가"호의 담보한도액을 외화로 정한 경우, 원화환산에 적용할 환율은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변제금을 수령할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로 적용합니다.

3. 균질권 결산기

채권자는 균질권 결산기를 정하는 다음의 세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, 설정자는 에서 정한 날을 결산기로 하기로 합니다.

지 정 형		
년	월	일

자 동 확 정 형

정하지 아니합니다.

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저당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,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,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. 다만, 5년이 경과 할 때까지 설정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.

## 장래지정형

정하지 아니합니다.

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저당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,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,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.

## 제2조 근질권의 효력 범위

- 근질권의 효력은 담보물의 원금 \*수익권(이 계약 이후에 적립한 적립금을 포함합니다.)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 \*수익의 수익권, 특별이자, 장려금, 배당금, 상환금과 무상주에 미칩니다.
-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기간연장 \*개설 \*갱신 \*분할 \*병합 \*증액 \*감액 등을 한 때에는 그 위에도 근질권의 효력이 미칩니다.

## 제3조 위험부담 \* 면책조항

- 설정자는 채권자에게 인도할 담보증서(통장)가 불가항력 \*사변 \*재해 등 채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분실\*손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(통장)을 제출하기로 합니다.
- 담보증서(통장) \*담보물수령증(통장)등의 증서상의 인영\*서명을 설정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 \*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 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EO에는 증서들과 인감 \*서명에 관하여 위조 \*변조 \*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설정자가 부담하며, 설정자는 증서의 기재문언에 EK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.
- 담보목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, 설정자는 그 증권에 관한 상환공고 \*제출공고 등에 유의하고, 이를 공고가 있는 EO에는 곧 채권자에게 통지하며, 이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채권자가 증권의 추심이나 기타의 권리행사 또는 보전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모두 설정자가 부담합니다.

## 제4조 보험계약

- 담보목적물이 유체동산인 경우, 설정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채권자가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으로 보험계약을 맺고,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위에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보험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며, 이 계약에 정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동안 이를 계속 유지합니다.
- 설정자는 전항에 의한 보험계약 외에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따로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는 이를 곧 채권자에게 통지하며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에 대하여도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합니다.
- 설정자가 제1항, 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한 보험계약을 설정자를 대신하여 맺거나 계속하고 그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, 채무자와 설정자는 연대하여 채권자가 지급한 보험료 기타의 제 비용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제4조에 준하여 곧 갚습니다.
-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험계약에 터잡아 채권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, 다른 담보물의 제공 \*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, 피담보채무의 기한 도래전임지라도,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.

## 제5조 담보목적물의 처분 등

- 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예\*적금, 신탁 기타 채권에 가압류\*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에는, 채무자는 피담보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피담보채무를 곧 상환하기로 하며, 채권자는 보증인이 제공한 담보 예\*적금, 신탁 기타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실행하거나 또는 담보목적물이 예금 등의 채권인 경우에는 대부거래기본약관에 준하여 상계 등을 할 수 있습니다.
-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[민사집행법]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,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합니다.“채무자동”은 채무자, 설정자, 담보목적물의 제 3자득자를 말합니다.
  - (1)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
  - (2)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
  - (3)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
  - (4)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
-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채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, 그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채권자가 산정한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 짜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  - (1) 담보권 실행의 방법
  - (2) 피담보채권의 금액
  - (3)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
  - (4)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
- 제1항의 경우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 위해 부족한 때에는 대부거래기본약관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.

## 제6조 비용부담

채권자의 이 계약에 의한 권리의 보전이나 행사 등에 관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고, 채권자가 이를 대신 지급한 때에는 대부거래기본약관에 준하여 곧 갚습니다.

## 제7조 다른담보 \*보증약정과의 관계

- 설정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같은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이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 계약에 의한 담보 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.
- 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설정자가 같은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 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전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 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합니다.

#### 제8조 담보 등의 변경 \*해지 \*해체

설정자가 동의를 한 때나, 동등한 가치이상의 담보대체, 동등한 자력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\*해체 등 설정자가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, 채권자는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 \*해제할 수 있기도 합니다.

#### 제 9조 담보목적물의 표시

##### 1. 질권의 목적인 예금등의 표시

(단위 : 원)

종별	증서기번호	명의인(위탁자)	금액 (계약액)	2018. . . 까지 입금누계액	담보제공금액	증서 일자	지급일자
	계약번호	수익자					

##### 2. 질권의 목적인 동산, 지명채권, 유가증권 등의 표시

###### <동산, 지명채권용, 유가증권용>대상목적물 표시

 -BTS 아가타 백팩 총제작수량 2,000개 중 1,000개
--

#### 제10조 기타 특약사항

설정자 :	(인)

\* 설정자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.

(기재 예시 : 1. 수령함, 2. 들었음)

1. 대부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?	
2.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?	

담보제공자(근질권 설정자)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

#### 질권이란

-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, 채권자가 담보로 취득한 예\*적금 등의 지명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,

추가증권\*동산 등의 담보물을 처분하여 그 추심 또는 매각대금으로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입니다.

- 따라서 자기 소유의 예\*적금이나 유가증권\*동산 등에 차인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재산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.

### 담보종류에 따른 책임범위

- [특정채무담보]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특정된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으로, 그 채무가 연기 \*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.

- [근담보]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 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게 되는 것으로 두가지 유형이 있으며, 각 유형에 따른 책임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#### - [특정 근담보]

특정된 거래계약(예: 년 월 일자 대출거래약정서)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며, 그 채무가 기한연장된 때에도 담보합니다. 그러나 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.

#### - [한정 근담보]

특정한 종류의 거래(예: 당좌대출거래)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모두 담보하며, 그 채무의 연장이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담보 합니다.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.

###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까지 서는 경우



-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을 별도로 서는 경우 채권자는 담보제공한 재산외에 담보제공자의 다른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.